

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· 운영조례(안)」

《檢討報告書》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조례(안)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제정(제안) 이유
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(2004.3.11)이 제정·공포되어 종전의 재난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,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6조, 제7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영등포구안전관리위원회, 영등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, 영등포구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.

□ 주요골자

- 구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·조정, 구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등의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. (안 제3조)
-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영등포소방서장, 영등포경찰서장 등의 재난과 관련된 자가 된다. (안 제4조)

- 위원회의에 부의를 의안을 사전검토하고,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둔다. (안 제8조)
- 관할구역안의 재난응급대책의 총괄·조정 및 집행 등의 기능을 한다. (안 제16조)
- 대책본부에는 본부장과·차장·통제관·반장을 둔다. (안 제17조)
- 구 안전관리계획,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사항, 주민이 경감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 등을 자문하는 기능을 한다. (안 제21조)
- 안전관리자문단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단장은 재난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며, 자문위원은 관련분야 대학교수,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. (안 제22조)
-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 한다. (부칙 안 제2조)

□ 검 토 의 견

- 새로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의 개념을 자연재해와 인적재난 이외에 에너지·통신·교통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로 인한 피해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,

종전 별도로 수립·시행되어 오던 자연재해대책법 상의 방재계획과 재난관리법 상의 재난관리계획을 통합한 국가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각종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및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난발생의 예방·구조·복구관리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재난대비의 역량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

- 이에따라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지역별재난안전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(법 제11조 제4항, 법 제16조 제3항, 법 제75조 제2항)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, 2004년 10월 11일 각 자치구로 시달은 소방방재청의 표준조례안과 서울시 조례안에 기준한 것이어서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기타 입법 형식상 제기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.
- 다만, 개별조항을 살펴볼 때
 - 제2조에서 “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”고 규정하면서 제1호 내지 제11호까지 나열하였는 바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된 사항이므로 “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”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
 - 제3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대책본부의 실질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므로, 제20조로 “안전대책 관계관회의”, 제21조로 “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유지”, 제22조로 “인력·물적·장비 등 동원체계구축”, 제23조로 “현장모니터 및 공보전담관 위촉” 규정을 따로드린 수정의견과 같이 조항을 신설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,

- 이에 따라 제20조는 제24조로, 제21조는 제25조로, 제22조는 제26조로, 제23조는 제27조로, 제24조는 제28조로, 제25조는 제29조로, 제26조는 제30조로, 제27조는 제31조로, 제28조는 제32조로, 제29조는 제33조로, 제30조는 제34조로, 제31조는 제35조로 조문의 번호 이동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,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동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 구성·운영조례(안)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5. 5. 6

보고자 : 김찬재